

## 부록

### 1\_일본 도쿄도 관련 주요 법 규정

#### [부록 표 1] 도쿄도의 조직규정

(도쿄도청 조직 규정)을 다음처럼 규정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본청국 및 분과

제3장 본청행정기관

제4장 지방행정기관

제5장 부속기관

부칙

제1장 총칙

(이 규정의 목적)

제1조 이 규정은 지사 및 회계관리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의 설치)

제2조 전조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 및 그 소장사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이 규칙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다.

(기관의 종별)

제3조 전조의 기관을 나누어 본청, 본청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으로 한다

(본청)

제4조 본청이란 지방자치법 제158조 등의 규정에 기초하여 장의 직속하위(직근하위)의 내부조직을 말한다

(본청행정기관)

제5조 본청행정기관이란 시험연구기관, 사업소 및 사무소 등에 있어 본청, 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지방행정기관)

제6조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

제7조 부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4제3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 제2장 본청국 및 분과

(본청분과)

제8조 본청의 국 및 그 분과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정책기획국

- 총무부 총무과 비서과 관리과
- 조정부 정책과 섭외과 보도과
- 계획부 계획과
- 외무부 관리과 기획과 사업과

### 총무국

-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문서과 법무과
- 부흥지원대책부 피해지지원과 도내피난자지원과
- 행정개혁추진부 행정개혁과 감리단체지도과
- 정보통신기획부 기획과
- 인사부 인사과 직원지원과 제도기획과 조사과
- 컨플라이언스추진부 컨플라이언스추진과
- 행정부 진흥기획과 구정과 시정촌과
- 종합방재부 방재관리과 방재계획과 방재대책과 방재통신과
- 통계부 조정과 인구통계과 산업통계과 사회통계과
- 인권부 기획과 인권시책추진과

### 재무국

- 경리부 총무과 계약제1과 계약제2과 검수와
- 주계부 의안과 재정과 예산제1과 예산제2과 예산제3과 공채과
- 재산운용부 관리과 종합조정과 활용촉진과
- 건축보전부 공무과 기술관리과 청사관리과 청사정비과 시설정비제1과 시설정비제2과  
올림픽패럴림픽시설정비과

### 주세국

- 총무부 총무과 직원과 경리과
- 세제부 세제과 세제조사과 세입과 시스템관리과 평가심사와
- 과세부 계획과 과세지도과 법인과세지도과 사찰과
- 자산세부 계획과 고정자산세과 고정자산평가과
- 징수부 계획과 징수지도과 납세추진과 개인도민세대책과 기동정리과

### 생활문화국

-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 광보광청부 광보과 정보공개과 도민의 소리와
- 도민생활부 관리법인과 지역활동추진과 남녀평등참획과 여권과
- 소비생활부 기획조정과 거래지도과 생활안전과

---

과학부 과학진흥과 사학행정과  
문화진흥과 기획조정과 문화사업과

올림픽패럴림픽준비국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종합조정부 조정과 연계추진과 계획운영과  
패럴림픽부 조정과 장애인스포츠과  
대회시설부 조정과 시설정비제1과 시설정비제2과  
스포츠추진부 조정과 사업추진과

도시정비국

총무부 총무과 직원과 기획계리과 기술관리과  
도시만들기정책부 광역조정과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과 녹지경관과  
주택정책추진부 주택정책과 민간주택과 맨션과 부동산업과  
도시기반부 조정과 교통기획과 가로계획과  
시가지정비부 관리과 기획과 방재도시만들기와 구획정리와 재개발과  
다마뉴타운사업실  
시가지건축부 조정과 건축기획과 건축지도과 건설업과  
도영주택경영부 경영기획과 지도관리과 자산활용과 주택정비과  
시설정비부  
기지대책부

환경국

총무부 총무과 환경정책과 경리과  
지구환경에너지부 계획과 총량삭감과 지역에너지와 환경도시만들기와 차세대에너지추진과  
환경개선부 계획과 대기보전과 화학물질대책과 환경보안과 자동차환경과  
자연환경부 계획과 녹환경과 수환경과  
자원순환추진부 계획과 일반폐기물대책과 산업폐기물대책과

복지보건국

총무부 총무과 기획정책과 계리과 계약관재과 직원과  
지도감사부 지도조정과 지도제1과 지도제2과 지도제3과  
의료정책부 의료정책과 구급재해의료과 의료안전과 의료인재과  
보건정책부 보건정책과 건강추진과 질병대책과 의료조성과 국민건강보험과  
생활복지부 계획과 보호과 생활지원과 지역복지추진과  
고령사회대책부 계획과 개호보험과 재택지원과 시설지원과  
저출산사회대책부 계획과 가정지원과 육성지원과 보육지원과  
장애인시설추진부 계획과 지역생활지원과 시설서비스지원과 정신보건의료과  
건강안전부 건강안전과 식품감시과 약무과 환경보건위생과 감염병대책과

산업노동국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직원과  
상공부 조정과 창업지원과 경영지원과 지역산업진흥과  
금융부 금융과 대금업대책과

---

관광부 기획과 진흥과 수입환경과  
농림수산부 조정과 식료안전과 농업진흥과 수산과 산림과  
고용취업부 조정과 취업추진과 노동환경과 능력개발과

#### 건설국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기술관리과 직원과 용도와  
용지부 관리과 용지와 조정과  
도로관리부 관리과 로정과 감찰지도과 보전과 안전시설과  
도로건설부 관리과 계획과 철도관련사업과 가로과 도로교량과  
3순환도로정비추진부 관리과 정비추진과  
공원녹지부 관리과 계획과 공원과 공원건설과  
하천부 관리과 지도조정과 계획과 개수와 방재과

#### 항만국

총무부 총무과 기획계리과 재무과  
항만경영부 경영과 진흥과  
임해개발부 개발기획과 유치촉진과 개발정비과 해상공원과  
항만정비부 건설조정과 계획과 기술관리과 시설건설과  
이도항만부 관리과 계획과 건설과

#### 회계관리국

관리부 총무과 공금관리과 회계기획과 출납과  
경찰/소방출납부 경찰출납부 소방출납부

- 2 전항의 분과에 분실을 둘 수 있다
- 3 분실의 분장사무, 직의 설치, 직원의 직책 등은 별도로 정한다

#### (국장의 직)

제9조 국에 국장을 둔다

- 2 회계관리국장은 회계관리자를 지니고 이에 맞춘다
- 3 국에 차장, 기감 및 이사를, 정책기획국에 위무장을, 총무국에 위기관리감을, 건설국에 도로감을 둘 수 있다

#### (부장의 직)

제10조 부에 부장을 둔다

- 2 국에 총무국장이 별도로 규정되면서 담당부장을 둔다
- 3 총무국컨플라이언스추진부에 주석감찰원 및 감찰원을 둔다

#### (과장의 직)

제11조 과에 과장을, 도시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다마뉴타운사업실에 실장을 둔다

- 2 부에 총무국장이 별도로 규정되면서 담당과장을 둔다
- 3 총무국컨플라이언스추진부에 부감찰원을 둔다
- 4 국의 부에 전문과장을 둘 수 있다
- 5 총무국에 법무담당과장을 둘 수 있다

---

(과장대리의 직책)

제12조 국장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8조제1항의 분과에 과장대리를 둔다

제13조 제9조에서 전조까지의 직 이외에 필요한 직을 둔다

(국장의 직책)

제14조 국장은 지사 및 부지사의 명을 받아(회계관리자가 법령에 기초하여 가지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함), 국의 사무(이하, 국무라 함)를 담당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국장은 국무의 집행상황에 대해 즉시 문서 또는 구두를 가지고 지사 및 부지사에 보고하도록 한다

3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국무를 정리한다

4 기감(技監)은 기술에 관해 국장을 보좌한다

5 차장 또는 기감이 2인 이상 설치된 국에서는 각 차장 및 기감이 실시하기 전에 2항의 직무 범위에 대해 지사의 승인을 받아 국장이 규정한다

6 이사는 국장을 보좌한다

7 외무장은 도시외교 관련 사무에 대해 지사를 보좌한다

8 위기관리감은 방재 및 위기관리 관련 사무에 대해, 총무국장을 보좌하고 이들의 사무를 정리한다

9 도로감은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관련 사무에 대해 건설국장을 보좌하고 이들의 사무를 정리한다

(부장의 직책)

제15조 부장(담당부장을 포함, 이하 동일)은 국장의 명을 받아 부의 사무 또는 담임 사무를 담당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부장은 부의 사무 또는 담임의 사무 집행상황에 대해 즉시 문서나 구두를 지니고 국장에 보고하도록 한다

3 주석감찰원은 총무국장의 명을 받아 감찰사무를 총괄한다

4 감찰원은 총무국장의 명을 받아 감찰사무를 담당한다

(과장의 직책)

제16조 과장(제11조제1항의 실장 및 담당과장을 포함, 이하 동일)은 부장의 명을 받아, 과(제11조제1항)의 실을 포함, 이하 동일)의 사무 또는 담임의 사무를 담당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과장은 과의 사무 또는 담임의 사무 집행상황에 대해 즉시 문서나 구두를 가지고 부장에 보고하도록 한다

3 부감찰원은 주석감찰원 또는 감찰원의 명을 받아 감찰사무에 해당한다

4 법무담당과장은 총무국장 또는 총무국 총무부장의 명을 받아,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법무사무를 처리한다

5 전문과장은 부장의 명을 받아 전문분야에 대해 담임의 사무를 처리한다.

(과장대리의 직책)

제17조 과장대리는 과장 또는 부감찰원의 명을 받아, 담임의 사무를 담당하고 해당 사무 관련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2 과장대리는 과장 또는 부감찰원을 보좌한다

3 과장대리는 담임의 사무 집행상황에 대해 즉시 문서나 구두를 가지고 과장에 보고하도록 한다

(그 외 직원의 직책)

제18조 제14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하는 직원 이외의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

---

#### 제4절 분장사무

(정책기획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

제19조 정책기획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0조 총무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1조 재무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2조 주세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3조 생활문화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3조의2 올림픽/패럴림픽 준비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4조 도시정비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5조 환경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6조 복지보건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7조 산업노동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8조 건설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29조 항만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30조 회계관리국 각 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와 과의 분장 사무를 열거)

제31조 본청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소장사무는 별표3과 같이 한다

---

---

제32조 전조에 규정하는 기관에는 각각 장을 둔다  
2 전항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장 사무를 담당한다

제33조 본청행정기관의 내부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소장사무는 별표4와 같이 한다

제35조 전조에 규정하는 기관에는 각각 장을 둔다  
2 전항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장 사무를 담당한다

제36조 지방행정기관의 내부조직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 부속기관의 명칭, 소장사무 및 조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

## **[부록 표 2] 인사행정 운영 상황 관련 일본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양식**

---

### 1. 총괄

#### (1) 인건비의 상황(일반회계 결산)

- 해당연도(전후)의 주민등록 인구(00년 1월 1일), 세출액, 실질수지, 인건비, 인건비율

#### (2) 직원급여비의 상황(일반회계 결산)

- 해당연도의 직원 수(매년 4월 1일 현재), 급여비(급료, 직원수당, 기말/근면수당, 총), 1인당 급여비, 광역평균 1인당 급여비

#### (3)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상황

- 연도별 해당 자치단체와 광역 평균의 지수 상황 그래프

#### (4) 급여변화의 상황

##### 1) 월례급

- 해당연도의 인사위원회의 권고안(민간급여, 공무원급여, 인상권고-개정율), 급여인상율, 국가공무원 개정율(참고)

##### 2) 특별급(기말/근면수당)

- 해당연도의 인사위원회의 권고안(민간급여, 공무원급여, 인상권고-개정율), 급여인상율, 국가공무원 개정율(참고)

#### (5) 급여제도의 종합적 개선 실시 상황

##### 1) 급료표의 개선

- 실시사항

- 미실시의 경우 그 이유

---

---

## 2) 지역 수당의 개선

- 실시내용(국가 기준의 경우 지급비율과 해당 자치단체의 지급 비율)

## 3) 그 외 개선 내용

### (6) 특기 사항

#### 2. 직원 평균 급여 월액, 첫 임금의 상황

(1) 직원 평균연령, 평균 급여 월액과 평균 급여 월액의 상황<sup>52)</sup>(2000년 4월 1일 현재)

##### 1) 일반행정직

-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부문별로 평균연령, 평균급여 월액, 평균 급여 월액, 평균 급여월액(국가와의 비교)을 국가, 광역 평균과 비교하여 게시

##### 2) 기능노무직

- 해당 자치단체의 관련 부문별로 평균연령, 직원 수, 평균급여 월액, 평균 급여 월액을 국가, 광역 평균과 비교하여 게시. 해당 지역 민간기업 유사업종의 정보도 비교 대상으로 기입

##### 3) 고등(특별지원/전수/각종) 학교 교육직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연령, 평균급여 월액, 평균급여 월액을 광역 평균과 비교 게시

##### 4) 초중학교(유치원) 교육직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연령, 평균급여 월액, 평균급여 월액을 광역 평균과 비교 게시

##### 5) 경찰직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연령, 평균급여 월액, 평균급여 월액, 평균 급여월액(국가와의 비교)을 국가, 광역 평균과 비교 게시

##### 6) 00직

- 해당 자치단체의 평균연령, 평균급여 월액, 평균급여 월액, 평균 급여월액(국가와의 비교)을 국가, 광역 평균과 비교 게시

(2) 직원의 첫임금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일반행정직, 기능노무직, 고등학교 교육직, 초중학교 교육직, 경찰직, 00직별로 대졸, 고졸 직원의 첫 임금을 해당 자치단체와 국가공무원의 액수를 기입

(3) 직원의 경험연수별/학력별 평균급여월액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일반행정직, 기능노무직, 고등학교 교육직, 초중학교 교육직, 경찰직, 00직별로 경험연수 10년, 20년, 25년, 30년의 대졸, 고졸 직원의 평균급여월액을 기입

#### 3. 일반행정직의 급별지원수의 상황

(1) 일반행정직의 급별지원수와 급료표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각 직급별 표준 직무내용, 직원수, 구성비, 1호봉의 급료월액, 최고봉의 급료 월액

(2) 승급에의 근무성적 반영상황

---

---

#### 4. 직원 수당의 상황

##### (1) 기말수당/근면수당<sup>53)</sup>

- 해당 자치단체와 국가의 2000년도의 1인당 평균 지급액, 기말, 근면수당의 비율
- 직제상의 단계, 직무 등급에 의한 가산조치 등의 상황

##### (2) 퇴직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해당자치단체의 근속별(20년, 25년, 35년, 최고한도액) 지급액, 1인당 평균지급(해당 연도에 지급된 퇴직금 평균)을 국가의 수치와 함께 기입

##### (3) 지역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지급실적, 지급직원 1인당 평균 지급 연액
- 지급대상 지역, 지급률, 지급대상 직원 수, 국가의 지급률

##### (4) 특별근무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지급실적
- 지급직원 1인당 평균 지급연액
- 직원전체에서의 수당지급

##### (5) 시간외 근무수당

- 지급실적
- 직원 1인당 평균지급연액

##### (6) 그 외 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수당명: 부양수당, 주거수당, 통근수당, 관리직 수당, 휴일 근무수당, 산업교육수당
- 내용, 국가와의 동일 여부와 차이 내용, 지급실적, 1인당 평균 지급액

#### 5. 특별직 보수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대상: 지사/부지사, 의장/부의장/의원
- 항목: 급료/보수, 기말수당, 퇴직수당

#### 6. 퇴직수의 상황

##### (1) 부문별 직원 수의 상황과 주요 증감이유

- 일반회계부문(일반행정, 교육, 경찰, 그 외)의 직원 수와 증감이유
- 공기업의 회계부문의 직원 수와 증감이유

##### (2) 연령별 직원구성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연령대별(20세 미만, 20살부터는 3살 단위로 구분/조사, 마지막은 60세 이상) 직원 수

##### (3) 직원 수의 추이

- 일반행정
  - 교육
  - 경찰
  - 소방
  - 일반회계 합계
-

- 
- 공기업회계 합계
  - 총 합계

## 7. 공기업직원의 상황

### (1) ○○ 사업

#### 1) 직원급여의 상황

##### ① 결산

- 연도, 총비용, 순손익 또는 실질수지, 직원급여비, 총비용 중 직원급여비 비율

##### ② 특기사항

#### 2) 직원의 평균연령, 기본급과 평균월수액의 상황(2000년 4월 1일 현재)

- 평균연령, 기본급, 평균월수액

#### 3) 직원 수당의 상황

##### ① 기말수당/근면수당

- 1인당 평균지급액, 기말수당/근면수당의 지급 비율

##### ② 퇴직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근속 20년, 근속 25년, 근속 35년, 최고한도액, 1인당 평균지급액

##### ③ 지역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지급실적, 지급 직원 1인당 평균 지급연액
- 지급지역, 지급률, 지급대상 직원 수, 일반행정직의 지급률

##### ④ 특수근무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지급실적, 직원 1인당 평균지급연액, 직원 전체에서의 수당지급직원 비율
- 수당의 종류별로 명칭, 주요 지급 대상직원, 주요 지급대상사무, 지급실적, 지급 단가

##### ⑤ 시간외 근무수당

- 지급실적, 직원 1인당 평균지급연액

##### ⑥ 그 외 수당(2000년 4월 1일 현재)

- 수당명: 부양수당, 주거수당, 통근수당, 관리직 수당, 휴일출근수당
  - 내용과 지급액, 일반행정직과의 동일 여부와 차이점, 지급실적, 1인당 평균지급연액
- 

52) 평균 급여 월액이란 2000년 4월 1일 현재 직종별 직원의 기본급 평균을 가리키며, 평균 급여 월액이란 급여 월액과 매월 지급되는 부양수당, 지역수당, 주거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모든 수당 액수를 합계한 것을 말한다. 평균 급여 월액(국가와의 비교)은 비교를 위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 베이스(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제외)에서 산출한 것이다.

53) 상반기(6월), 하반기(12월)에 지급되는 수당

## 2\_프랑스 파리시 관련 주요 법 규정

### [부록 표 3] 프랑스 헌법 규정 제72조 제2항~3항

---

프랑스 헌법 제72조제③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는 선출된 지방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자치)행정권을 행사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법규제정권(행정입법권, pouvoir réglementaire)을 가진다.

Article 72③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loi, ces collectivités s'administrent librement par des conseils élus et disposent d'un pouvoir réglementaire pour l'exercice de leurs compétences.

---

### [부록 표 4] 프랑스 기초정부의 지방의회 의견권(법률규정 제L2121-29조)

---

기초정부의회(conseil municipal)는 기초정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의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기초정부의회는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또는 도의 국가대표(임명도지사, représentant de l'Etat)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 의견을 준다. 이상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초정부의회가 의견을 주지 않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정부의회는 기초정부의 관할지역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사항(objets d'intérêt local)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

Article L2121-29

Le conseil municipal règle par ses délibérations les affaires de la commune. Il donne son avis toutes les fois que cet avis est requis par les lois et règlements, ou qu'il est demandé par le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Lorsque le conseil municipal, à ce régulièrement requis et convoqué, refuse ou néglige de donner avis, il peut être passé outre. Le conseil municipal émet des vœux sur tous les objets d'intérêt local.

---

### [부록 표 5] 기초정부에 부여된 자치입법권의 조례 제정 기준(통합지방자치법 제L2131-1조)

---

기초정부가 결정한 행정행위(actes)는 최고의결기관인 의회 및 집행기관에서 결정한 뒤 일반주민들에게 공표하거나 발간, 그리고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가의 지방대표(임명도지사, représentant de l'Etat) 등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즉시 집행력을 가진다.

Article L2131-1

Les actes pris par les autorités communales sont exécutoires de plein droit dès qu'il a été procédé à leur publication ou affichage ou à leur notification aux intéressés ainsi qu'à leur transmission au représentant de l'Etat dans le département ou à son délégué dans l'arrondissement. Pour les décisions individuelles, cette transmission intervient dans un délai de quinze jours à compter de leur signature.

---

**[부록 표 6] 프랑스 헌법 제34조 제2항**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관해서도 정한다. 해외영토를 포함한 프랑스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 지방의회 및 민주적으로 대표하는 기관들에 관한 선거제도 그리고 지방정부의 의회를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의 선출 직 임기와 기능 수행 조건 등을 법률로 제정한다.

Article 34② La loi fixe également les règles concernant: le régime électoral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des assemblées locales et des instances représentatives des Français établis hors de France ainsi que les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électoraux et des fonctions électives des membres des assemblées délibérante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부록 표 7] 파리 부시장 수 및 선출인원의 법적 근거(프랑스 통합지방자치법전, CGCT: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제2122-2조).**

프랑스 지방정부의회는 해당 의회의 법정 인원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장(adjoints au maire) 수를 결정한다.

Article L2122-2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Créé par Loi 96-142 1996-02-21 jorf 24 février 1996: "Le conseil municipal détermine le nombre des adjoints au maire sans que ce nombre puisse excéder 30 % de l'effectif légal du conseil municipal."

**[부록 표 8] 지방정부와 국가 간의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32-1조(기초정부의회의 자치결정권)  
통합지방자치법전 제L2122-22조의 16항 규정에 근거해서, 기초정부의회는 기초정부를 대표하여 수행 하고자 하는 행정행위를 결정하여 의결한다.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du 16<sup>o</sup> de l'article L2122-22, le conseil municipal délibère sur les actions à tenter au nom de la commune.

제L1111-2조(자율적 사무처리권, 국가와 협력의무)  
지방정부인 교민, 데파르트망, 레지옹은 각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에) 집행권을 가진 사무들을 수행한다.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et les régions règlent par leurs délibérations les affaires de leur compétence.

지방정부인 교민, 데파르트망, 레지옹은 국토개발 및 유지관리, 경제사회와 보건위생, 문화, 과학 분야의 발전, 그리고 환경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와 협력한다.

Ils concourent avec l'Etat à l'administration et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au développement économique, social, sanitaire, culturel et scientifique, ainsi qu'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à l'amélioration du cadre de vie.

---

지방정부인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은 지역의 삶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성해야 하고, 주민들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et les régions constituent le cadre institutionnel de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à la vie locale et garantissent l'expression de sa diversité.

---

### 3\_영국 런던대도시 관련 주요 법 규정

#### [부록 표 9] 지방주의법 제1조 ~ 제3조

---

지방주의법에서는 영국 지방정부의 포괄적 사무수행 권한을 인정(localism act 2011 제1조)하면서, 제2조에서는 포괄적 사무수행 권한에 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주의법 제1편 제1장 제1조: 지방정부의 포괄적 사무수행 권한: (1) 지방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무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진다(또는, 지방정부는 개인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Local authority’s general power of competence: (1) A local authority has power to do anything that individuals generally may do.”

지방주의법 제1편 제1장 제2조: 포괄적 사무수행 권한의 제한 범위 규정  
“(2) Boundaries of the general power”

지방주의법 제1편 제1장 제3조: (3)“업적 이익의 목적으로 지방정부의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상업적 이익의 목적으로 지방정부 권한을 사용할 경우의 제한적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중복사무의 수행 등의 경우 주무장관이 사무수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주의법 제1편 제1장 제3조~제5조)

“3. Limits on charging in exercise of general power; 4. Limits on doing things for commercial purpose in exercise of general power; 5. Powers to make supplemental provision”

---

#### [부록 표 10] 런던시의 포괄적 자치입법권에 관한 법규정(런던대도시법 제30조 제(2)항)

---

런던대도시법에서 런던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한 집행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는 것은 (a) 런던대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부의 창출 증진, (b) 런던대도시의 사회적 발전 증진, (c) 런던대도시의 환경개선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2) Any reference in this Act to the principal purposes of the Authority is a reference to the purposes of (a)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wealth creation in Greater London; (b)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in Greater London; and (c)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in Greater London.

---

**[부록 표 11] 런던시의 자치조직 관련 법규정(런던대도시법(Greater London Authority Act 2007)  
제1조~제16조)**

제1조 런던대도시 정부로 하여금 시장의 보수수준 결정권, 런던대도시의회의 의원구성 및 의원자격 정지 등에 관련된 규정 제정,

제2조 시장의 시정운영전략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제정, 제3조 시장의 런던대도시의회에 정기보고 책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Section 1: allows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administer a severance pay scheme for the Mayor of London (“the Mayor”) and the members of the London Assembly (the “Assembly members”) on ceasing to hold office. Section 2: introduces additional procedures relating to consultation on Mayoral strategies. Section 3: brings forward the date by which the Mayor must make a report to the London Assembly (“the Assembly”) before each of the ten.

**[부록 표 12] 런던 시장의 지휘 및 임명 권한에 관한 법규정**

30. (10) 이 조항에 의해 런던시(Authority: 대표기구인 시장 및 지방의회)에 부여되거나 규정된 기능은 시장이 시 대표기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장의 기능이다.

30. (10) The functions conferred or imposed on the Authority under or by virtue of this section shall be functions of the Authority which are exercisable by the Mayor acting on behalf of the Authority.

67. (1)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 (a) 2명 이하의 정치자문 위원
- (b) 10명 이하의 정책보좌진

(2) 의회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시장과 협의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 (a) 시장이 위 (1)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들을 수행하는 정도와 방식, 또는 그러한 권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정도와 방식 등에 대하여,
- (b) 이 규정하에서 의회의 권한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장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시장 또는 의회가 개별적으로, 아니면 시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런던시의 사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임명하기 위해 시장의 의견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따라 임명된 직원들은 런던대도시의 지방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67. (1) The Mayor may appoint

- (a) not more than two persons as his political advisers; and
- (b) not more than ten other members of staff.

(2) The Assembl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Mayor and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 (a) the manner in which, and the extent to which, the Mayor has exercised, or proposes to exercise, the powers conferred by subsection (1) above, and
- (b) any views of the Mayor as to the exercise of the Assembly’s powers under this subsection, may appoint such staff as it considers necessary for the proper discharge of such functions of the Authority as are respectively exercisable by the Mayor, the Assembly, and the Mayor and Assembly acting jointly.

(3) Any appointment under subsection (1) or (2) above is an appointment as an employee of the Authority.

## 4\_미국 뉴욕시 관련 주요 법 규정

### [부록 표 13] 뉴욕 주 헌법 8조 (Article VIII Local Finance)

[Gift or loan of property or credit of local subdivisions prohibited; exceptions for enumerated purposes]

언급된 목적 이외의 재산 증여나 용자 또는 지방 세목의 신용은 금지된다.

“Section 1. No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shall give or loan any money or property to or in aid of any individual, or private corporation or association, or private undertaking, or become directly or indirectly the owner of stock in, or bonds of, any private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r shall any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give or loan its credit to or in aid of any individual, or public or private corporation or association, or private undertaking, except that two or more such units may join together pursuant to law in providing any municipal facility, service, activity or undertaking which each of such units has the power to provide separately.”

섹션 1.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교육구는 특정한 돈이나 재산, 개인의 재정지원, 개인회사 혹은 협회, 개인사업, 또는 직간접적으로 주식의 소유주가 되는 모든 민간 법인이나 협회에 자금이나 재산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단위에서 참여하여 법에 따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립 시설, 서비스, 활동 또는 사업은 예외로 둔다.

“Each such unit may be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to contract joint or several indebtedness, pledge its or their faith and credit for the payment of such indebtedness for such joint undertaking and levy real estate or other authorized taxes or impose charges therefo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otherwise restricting the power of such units to contract indebtedness or to levy taxes on real estate.”

각 단위들은 입법부의 권한으로 공동 혹은 여러가지 채무를 청산할 수 있으며 공동 사업에 관한 채무 지불에 대해 신탁과 신용을 보증하고, 부동산 또는 기타 공인 세금이나 요금을 지불하여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위들의 부채상환을 제한하거나 부동산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The legislature shall have power to provide by law for the manner and the proportion in which indebtedness arising out of such joint undertakings shall be incurred by such units and shall have power to provide a method by which such indebtedness shall be determined, allocated and apportioned among such units and such indebtedness treated for purposes of exclusion from applicable constitutional limitations, provided that in no event shall more than the total amount of indebtedness incurred for such joint undertaking be included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all such participating units to incur indebtedness. Such law may provide that such determination,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shall be conclusive if made or approved by the comptroller. This provision shall not prevent a county from contracting indebtedness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to a town or school district, pursuant to law, the amount of unpaid taxes returned to it.”

입법부는 특정 단위들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업들의 부채의 방식과 비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부채가 단위들 사이에서 결정되고 할당되며 배분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입법부는 특정 단위들에서 진행되는 공동 사업들의 부채의 방식과 비율에 대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부채가 단위들 사이에서 결정되고 할당되며 배분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헌법상으로 적용되는 제한에서 제외되는 목적으로 취급되는 채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총액을 넘어서지 않으며, 채무를 발생시키는 모든 참여 단위의 권한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감사관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법은 그러한 결정, 할당, 배분을 결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타운 또는 교육구를 개별할 목적으로 카운티가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Limitations on local indebtedness]

§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stitution, no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described in this section shall be allowed to contract indebtedness for any purpose or in any manner which, including existing indebtedness, shall exceed an amount equal to the following percentages of the average full valuation of taxable real estate of such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

§4. 본 헌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항에 언급된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또는 교육구는 기존의 부채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액수를 초과하는 어떠한 목적이나 방식으로도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 해당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학교 구역의 과세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 (a) the county of Nassau, for county purposes, ten per centum;
- (a) 나사우 카운티는 카운티 목적으로 10%;
- (b) any county, other than the county of Nassau, for county purposes, seven per centum;
- (b) 나사우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는 7%;
- (c) the city of New York, for city purposes, ten per centum;
- (c) 뉴욕시, 도시 목적에 의해 10%;
- (d) any city, other than the city of New York, having one hundred twenty-five thousand or more inhabitants according to the latest federal census, for city purposes, nine per centum;
- (d) 뉴욕 시를 제외한 도시들 중 인구 조사에 따라 125,000명이나 그 이상의 주민이 있는 도시들의 경우는 시의 목적에 의해 9%;
- (e) any city having less than one hundred twenty-five thousand inhabitants according to the latest federal census, for city purposes, excluding education purposes, seven per centum;
- (e) 최신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125,000명 이하의 주민이 있는 시는 교육 목적을 제외한 시의 목적에 의해 7%;
- (f) any town, for town purposes, seven per centum;
- (f) 모든 타운은 도시 목적에 의해 7%;
- (g) any village for village purposes, seven per centum; and
- (g) 모든 빌리지는 빌리지의 목적에 의해 7%;
- (h) any school district which is coterminous with, or partly within, or wholly within, a city having less than one hundred twenty-five thousand inhabitants according to the latest federal census, for education purposes, five per centum;
- (h)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125,000명 미만의 인구를 가진 시의 교육구는 교육 목적에 따라 5%; provided, however, that such limitation may be increased in relation to indebtedness for specified objects or purposes with

그러나 이러한 제한조건들은 특정 대상 또는 목적에 대한 부채와 관련하여 증가될 수 있다.

(1) the approving vote of sixty per centum or more of the duly qualified voters of such school district voting on a proposition therefor submitted at a general or special election, (2) the

consent of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and (3) the consent of the state comptroller. The legislature shall prescribe by law the qualifications for voting at any such election.

(1) 발의된 안에 관한 일반 혹은 특정 투표에서 교육구의 유권자 중 60% 또는 그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을 때, (2) 뉴욕 주립대학교 이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 (3) 주 감사관의 동의가 있을 때 입법부는 그러한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

[Limitations on local indebtedness]

§4.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constitution, any indebtedness contracted in excess of the respective limitations prescribed in this section shall be void.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any city having less than one hundred twenty-five thousand inhabitants according to the latest federal census to contract indebtedness, indebtedness heretofore contracted by such city for education purposes shall be excluded."

이 헌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조에 규정된 각각의 제한을 초과해 계약된 부채는 무효이다.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주민이 125,000명 미만인 도시의 권한을 보장하며 교육 목적으로 그 도시가 이전까지 갖고 있던 부채는 제외된다.

"Such indebtedness so excluded shall be included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a school district which is coterminous with, or partly within, or wholly within, such city to contract indebtedness. The legislature shall prescribe by law the manner by which the amount of such indebtedness shall be determined and allocated among such school districts."

그렇게 배제된 부채는 해당 시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부채 상환을 위해 교육구의 권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입법부는 법률에 따라 부채의 금액을 결정하고 그것을 교육구들에 할당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Such law may provide that such determinations and allocations shall be conclusive if made or approved by the state comptroller.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a school district described in this section to contract indebtedness, certificates or other evidences of indebtedness described in paragraph A of section five of this article shall be excluded."

법은 주 정부 감사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결정들이나 배정들을 결정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설명된 교육구의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제5항의 A단락에 설명된 부채의 증빙 또는 기타 증빙은 제외된다.

"The average full valuation of taxable real estate of any such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shall be determined in the manner prescribed in section ten of this article. Nothing contained in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restrict the powers granted to the legislature by other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to further restrict the powers of any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to contract indebtedness."

해당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교육구의 과세 대상 부동산의 평균 전체 과세액은 이 조항 제10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떤 것도 헌법의 다른 규정들의 입법권에 부여된 권한들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나아가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교육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New.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6, 1951. Substituted for §4, derived in part from former §10, renumbered and amended by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938 and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8, 1938.” 국민 투표에 의해 1951년 11월 6일에 승인됨. §10에서 부분적으로 유래 된 §4로 대체되고, 1938년 헌법 협약에 따라 번호가 매겨지고 개정되었으며, 국민 투표에 의해 1938년 11월 8일에 승인됨)

“[Debt-incurring power of New York city; certain additional indebtedness to be excluded] §7.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the city of New York to contract indebtedness, in addition to the indebtedness excluded by section 5 of this article, there shall be excluded:”  
§7. 뉴욕시의 부채 청산 권한을 보장함에 있어, 본 항목의 5항에서 제외된 부채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외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A. Indebtedness contracted prior to the first day of January, nineteen hundred ten, for dock purposes proportionately to the extent to which the current net revenues received by the city therefrom shall meet the interest on and the annual requirements for the amortization of such indebtedness. The legislature shall prescribe the method by which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amount of any such indebtedness to be so excluded shall be determined, and no such indebtedness shall be excluded except in accordance with such determination. The legislature may confer appropriate jurisdiction on the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the first judicial department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any such indebtedness to be so excluded.”

A. 시의 현재 순 수입액에 비례하여 도크 목적으로 1월 1일 19시 10분 이전에 책정된 부채는 그것의 할부 상환을 위한 이자 및 연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입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부채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다른 부채는 별도의 예외 없이는 제외되지 않는다. 입법부는 제1사법부의 대법원 항소 부서에 적절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는 목적의 차원에서 일정량의 부채를 면제할 수 있다.

“B. The aggregate of indebtedness initially contracted from time to time after January first, nineteen hundred twenty-eight, for the construction or equipment, or both, of new rapid transit railroads, not exceeding the sum of three hundred million dollars. Any indebtedness thereafter contracted in excess of such sum for such purposes shall not be so excluded, but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the refunding of any of the indebtedness excluded hereunder.”

B. 초기에 부채 총계는 1월 1일 19시 28분 이후부터 생겨 새로운 고속 운송 철도의 건설 또는 장비 모두에서 3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특정 목적들에 의해 액수를 초과하여 책정된 어떠한 채무도 면제되지 않지만, 이 조항은 본 계약에서 제외된 채무의 상환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C. The aggregate of indebtedness initially contracted from time to time after January first, nineteen hundred fifty, for the construction, re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city hospitals, not exceeding the sum of one hundred fifty million dollars. Any indebtedness thereafter contracted in excess of such sum for such purposes, other than indebtedness contracted to refund indebtedness exclud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not be so excluded.”

C. 1월 1일 19시 50분부터 수시로 책정된 초기 부채 총액은 1억 5,00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며 병원의 건설, 재건 및 장비에 관한 것이다. 어떤 목적들에 의해 정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채무는 이 항에 따라 제외된 환급받기로 계약된 채무 이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D. "The aggregate of indebtedness initially contracted from time to time after January first, nineteen hundred fifty-two,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new rapid transit railroads, including extensions of and interconnections with and between existing rapid transit railroads or portions thereof, and re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existing rapid transit railroads, not exceeding the sum of five hundred million dollars. Any indebtedness thereafter contracted in excess of such sum for such purposes, other than indebtedness contracted to refund indebtedness excluded pursuant to this paragraph, shall not be so excluded."

D. 1월 1일 19시 52분부터 수시로 책정된 채무의 총액은 기존의 고속철도 확장 및 연결성, 그리고 새로운 고속 운송 철도의 건설 및 장비에 관한 것이며 총액 5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떤 목적들에 의해 정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채무는 이 항에 따라 제외된 환급 받기로 계약된 채무 이외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E. Indebtedness contracted for school purposes, evidenced by bonds, to the extent to which state aid for common schools, not exceeding two million five hundred thousand dollars, shall meet the interest and the annual requirements for the amortization and payment of part or all of one or more issues of such bonds. Such exclusion shall be effective only during a fiscal year of the city in which its expense budget provides for the payment of such debt service from such state aid."

공공 학교에 대한 주 정부의 보조금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목적으로 책정된 채무는 이자율 및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슈에 관한 상황에 대한 연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는 비용 예산이 주 정부 보조금으로 부채 상황을 위해 제공되는 도시의 회계 연도 동안에만 유효하다.

"The legislature shall prescribe by law the manner by which the amount of any such exclusion shall be determined and such indebtedness shall not be excluded hereunder except in accordance with the determination so prescribed. Such law may provide that any such determination shall be conclusive if made or approved by the state comptroller."

입법부는 법률에 따라 면제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률은 주 정부 감사관이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그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Derived in part from former §10. Renumbered and amended by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938 and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8, 1938. Paragraph D added by amendment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8, 1949; paragraphs E and F add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6, 1951. Former paragraph A deleted; subsequent paragraphs relettered A to E by amendment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3, 1953.)"

(부분적으로 이전 §10에서 파생. 1938년 헌법 협약에 의해 수정되고 개정되었으며 1938년 11월 8일 국민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다. D단락은 1949년 11월 8일 국민 투표에 의해 승인된 수정안으로 추가되었다; E단락과 F단락은 국민 투표에 의해 1951년 11월 6일에 추가되었다. 전 단락 A는 삭제되었고; 후속 단락은 1953년 11월 3일 국민 투표에 의해 승인된 수정안에 의해 A에서 E로 다시 표기되었다.)

"[Debt-incurring power of New York city; certain indebtedness for railroads and transit purposes to be excluded]"

[철도 및 운송 목적을 위한 특정 부채가 제외됨]

---

“§7-a. In ascertaining the power of the city of New York to contract indebtedness, in addition to the indebtedness excluded under any other section of this constitution, there shall be excluded: ”

부채를 책정하는 뉴욕시의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이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면제된 부채 이외의 부채를 책정하는 사항을 제외되어야 한다:

“A. The aggregate of indebtedness initially contracted from time to time by the city for the acquisition of railroads and facilities or properties used in connection therewith or rights therein or securities of corporations owning such railroads, facilities or rights, not exceeding the sum of three hundred fifteen million dollars”.

시설 또는 권리를 소유한 법인들의 관계에서 철도시설 및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시에서 수시로 책정한 부채의 합계는 3억 5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Provision for the amortization of such indebtedness shall be made either by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sinking fund therefor or by annual payment of part thereof, or by both such methods.”

부채 상환에 대한 규정은 감소하는 기금의 설치 및 유지 혹은 그 일부의 연례 지불, 또는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Any indebtedness thereafter contracted in excess of such sum for such purposes shall not be so excluded, but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prevent the refunding of any such indebtedness.”

특정 목적들로 액수를 초과하여 책정된 어떠한 채무도 면제되지 않지만, 이 조항은 본 계약에서 제외된 채무의 상환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be restricted; further limitations on contracting local indebtedness authorized]“

제한되는 지방정부의 권한, 지방 부채에 대한 계약상의 추가 제한

“§12. It shall be the duty of the legislatur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to restrict the power of taxation, assessment, borrowing money, contracting indebtedness, and loaning the credit of counties, cities, towns and villages, so as to prevent abuses in taxation and assessments and in contracting of indebtedness by them.”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의 남용 및 부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평가, 대출, 부채 계약 및 카운티, 시, 타운, 그리고 빌리지의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부의 의무이다.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the legislature from further restricting the powers herein specified of any county, city, town, village or school district to contract indebtedness or to levy taxes on real estate. The legislature shall not, however, restrict the power to levy taxes on real estate for the payment of interest on or principal of indebtedness theretofore contracte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의회가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또는 교육구로 지정된 부채를 축소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입법부는 계약이 체결된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의 지불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New. Adopted by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1938 and approv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8, 1938. Amend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5, 1963.)”

---

**[부록 표 14] 뉴욕 주 헌법 9조 (Article IX Local Governments)(Bill of rights for local governments)**

“Section 1. Effective local self-government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re purposes of the people of the state. In furtherance thereof,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the following rights, 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in addition to those granted by other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

효과적인 지방자치정부 및 정부 간 협력은 국가와 국민의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본 헌법의 다른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 이외에도 다음의 권리, 권한, 특권 및 면제권을 갖는다.

“(a) Every local government, except a county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shall have a legislative body elective by the people thereof.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local laws as provided by this article.”

도시 내에 전적으로 포함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구를 갖는다.

모든 지방정부는 본 조에 규정된대로 현지 법률을 채택할 권한을 갖는다.

“(b) All officers of every local government whose election or appointment is not provided for by this constitution shall be elected by the people of the local government, or of some division thereof, or appointed by such officers of the local government as may be provided by law.”

이 헌법에 의해 선거 또는 임명이 규정되지 않은 모든 지방정부의 임원은 지사체 혹은 그 일부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방정부의 임직원에 따라 법적으로 선임될 수 있다.

“(c)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power to agree, as authorized by act of the legislature,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 state or one or more other governments within or without the state, to provide cooperatively, jointly or by contract any facility, service, activity or undertaking which each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 has the power to provide separately. Each such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pportion its share of the cost thereof upon such portion of its area as may be authorized by act of the legislature.”

지방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에 따라 연방정부, 주와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정부가 협조하여 공동으로 시설, 서비스, 활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며, 각각의 지방정부는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각 지방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으로 허가된 지역의 부분에 관해 비용 분담금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다.

“(d) No local government or any part of the territory thereof shall be annexed to another until the people, if any, of the territory proposed to be annexed shall have consented thereto by majority vote on a referendum and until the governing board of each local government, the area of which is affected, shall have consented thereto upon the basis of a determination that the annexation is in the over-all public interest. The consent of the governing board of a county shall be required only where a boundary of the county is affected.”

지방정부 또는 그 영토의 일부는 국민들이 국민 투표의 다다수 득표를 얻고 각 지방정부의 집행 이사회 동의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다른 지역에 병합되지 아니한다. 카운티의 관리위원회의 동의는 해당 카운티의 경계 내에서 유효한 경우에만 요구된다.

“On or before July first, nineteen hundred sixty-four, the legislature shall provide, where such consent of a governing board is not granted, for adjudication and determination, on the law

---

and the facts, in a proceeding initiated in the supreme court, of the issue of whether the annexation is in the over-all public interest.”

“(e) Local governments shall have power to take by eminent domain private property within their boundaries for public use together with excess land or property but no more than is sufficient to provide for appropriate disposition or use of land or property which abuts on that necessary for such public use, and to sell or lease that not devoted to such use. The legislature may authorize and regulate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eminent domain and excess condemnation by a local government outside its boundaries.”

지방정부는 과도한 토지 또는 재산과 함께 공공의 사용을 위해 경계 영역 내에서 특정 영역의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한을 갖지만, 그 용도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입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 행사를 허용하고 영역 밖에서의 비난을 제재할 수 있다.

“(f) No local government shall be prohibited by the legislature (1) from making a fair return on the value of the property used and useful in its operation of a gas, electric or water public utility service, over and above costs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and necessary and proper reserves, in addition to an amount equivalent to taxes which such service, if privately owned, would pay to such local government, or (2) from using such profits for payment of refunds to consumers or for any other lawful purpose.

(g) A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pportion its cost of a governmental service or function upon any portion of its area, as authorized by act of the legislature.”

지방정부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정부 서비스나 기능의 비용을 해당 지역의 일부에 분배할 권한을 가진다.

“(h) (1)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shall be empowered by general law, or by special law enacted upon county request pursuant to section two of this article, to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county government provided by the legislature or to prepare, adopt, amend or repeal alternative forms of their own.”

도시에 완전히 포함된 카운티를 제외한 카운티들은 일반 법률 또는 이 조항의 2절에 따라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입법부가 제공한 카운티 정부의 대체 양식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입양, 수정 혹은 폐지할 권리를 가진다.

“[Powers and duties of legislature; home rule powers of local governments;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입법부의 권한 및 의무; 지방 자치의 가정 규칙 권력; 지방정부의 법령

“§2. (a) The legislature shall provide for the creation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such manner as shall secure to them the rights, 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granted to them by this constitution.”

입법부는 본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권한, 특권 및 면책권을 그들에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창설 및 조직을 제공해야 한다.

“(b) Subject to the bill of rights of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pplicabl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the legislature: ”

지방정부들의 권리 장전의 주제와 헌법상의 다른 적용 가능한 규정들은:

---

---

“(1) Shall enact, and may from time to time amend, a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granting to local governments pow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of loc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e powers vested in them by this article. A power granted in such statute may be repealed, diminished, impaired or suspended only by enactment of a statute by the legislature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or at its regular session in one calendar year and the re-enactment and approval of such statute in the following calendar year.”

본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지방 법령 및 행정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법령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은 주지사의 승인을 받은 입법부의 법령으로 폐지, 축소 또는 정지될 수 있고, 그 해의 정례회의를 통해 이듬해 법령을 다시 제정하고 승인한다.

“(2) Shall have the power to act in relation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any local government only by general law, or by special law only (a) on request of two-thirds of the total membership of its legislative body or on request of its chief executive officer concurred in by a majority of such membership, or”

(a) 일반법에 의해서만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또는 정부와 관련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지는데, 특별한 경우로 입법부 전체 구성원 중 2/3의 요청에 의하거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에 최고관리인이 동의할 때, 혹은

“(b) except in the case of the city of New York, on certificate of necessity from the governor reciting facts which in the judgment of the governor constitute an emergency requiring enactment of such law and, in such latter case, with the concurrence of two-thirds of the members elected to each house of the legislature.”

(b) 뉴욕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사실을 서술하는 사실을 낭독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중 2/3의 찬성으로 회원들은 입법부의 각 부서로 선출된다.

“(3) Shall have the power to confer on local governments powers not relating to their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of loc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in addition to those otherwise granted by or pursuant to this article, and to withdraw or restrict such additional powers.”

그들의 재산, 특정 사안, 혹은 정부와는 무관하게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것에 추가하여, 지방 법령 및 행정부에 속하는 사안이나 정부는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추가 권한을 철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the membership and composition of its legislative body.”

도시, 타운 또는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인적 구성과 조합

“(3) The transaction of its business.”

사업의 거래

“(4) The incurring of its obligations, except that local laws relating to financing by the issuance of evidences of indebtedness by such local government shall be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

---

지방정부의 부채 증빙에 의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지방 법률이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무는 유효하다.

“(5) The presentation, ascertainment and discharge of claims against it.”

그것에 대한 클레임의 제시, 확인 및 방출

“(6) The acquisition, care, management and use of its highways, roads, streets, avenues and property.”

고속도로, 도로, 대로 그리고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사용

“(7) The acquisition of its transit facilities and the ownership and operation thereof.”

운송 시설의 소유 및 운영

“(8) The levy,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of local taxes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and of assessments for local improvements,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입법부에 의해 승인된 지방세의 징수, 그것의 관리 및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부합하는 지방 개선을 위한 과세

“(9) The wages or salaries, the hours of work or labor, and the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persons employed by any contractor or sub-contractor performing work, labor or services for it.”

임금 또는 급여, 노동 또는 근무 시간, 근로자, 하청업자가 노동이나 서비스를 위해 고용한 사람의 보호나 복지 및 안전

“(10) The government, protection, order, conduct, safety, health and wellbeing of persons or property therein.”

정부, 보호, 질서, 행동, 안전, 건강 및 개인 또는 재산의 복리

“(d) Except in the case of a transfer of functions under an alternative form of county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shall not have power to adopt local laws which impair the powers of any other local government.”

카운티 정부의 대안 형태로 기능을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의 권한을 손상시키는 현지 법률을 채택할 수 없다.

“(e) The rights and powers of local governments specified in this section insofar as applicable to any county within the city of New York shall be vested in such city. (Amended by vote of the people November 6, 2001.)”

뉴욕시 내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되는 이 절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권리와 권한은 해당 도시에 귀속된다. (국민 투표로 2001년 11월 6일 개정)

“[Existing laws to remain applicable; construction; definitions.]”

적용 가능한 기존 법; 구성; 정의들

“§3. (a)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restrict or impair any power of the legislature in relation to: ”

---

---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다:

“(1) The maintenance, support or administration of the public school system, as required or provided by article XI of this constitution, or any retirement system pertaining to such public school system.”

본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되는 공립학교 제도의 유지, 지원이나 관리 또는 그러한 공립학교 제도와 관련된 은퇴 제도

“(2) The courts as required or provided by article VI of this constitution, and”

이 헌법 제6조에 의해 요구되거나 보장되는 법원

“(3) Matters other than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a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또는 정부 이외의 사항

“(b)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any existing valid provisions of acts of the legislature or of local legislation and such provisions shall continue in force until repealed, amended, modified or superse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stitution.”

이 조항의 항목들은 입법부 또는 현존하는 지방 법령에 유효한 조항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본 헌법의 조항에 따라 철회, 수정 또는 대체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c) Rights, powers, privileges and immunities granted to local governments by this article shall be liberally construed.”

본 조항에 따라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리, 권한, 특권 및 면제는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다.

“(d) Whenever used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terms shall mean or include: ”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하거나 포함한다:

“(1) “General law.” A law which in terms and in effect applies alike to all counties, all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all cities, all towns or all villages.”

“일반법” 모든 카운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도시, 타운 또는 빌리지에 소속되는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2) “Local government.” A county, city, town or village.”

“지역 정부” 카운티, 시, 타운 또는 빌리지

“(3) “People.” Persons entitled to vote as provided in section one of article two of this constitution.”

“사람들” 이 헌법 제 2조 제 1항에 규정된 투표권이 있는 자

“(4) “Special law.” A law which in terms and in effect applies to one or more, but not all, counties, counties other than those wholly included within a city, cities, towns or villages.”

“특별법” 하나 또는 그 이상, 그러나 모든 카운티는 아닌, 도시, 타운, 빌리지에 완전히 포함된 카운티 이외의 카운티에 적용되는 조항

---

**[부록 표 15] 자치정부통치법의 제10항 (Section 10. Gener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1. In addition to powers granted in the constitution, the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or in any other law,”

헌법에서 부여된 권한 외에도, 지방정부의 법령 또는 기타 법에 따라,

“(i) every local government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consistent with any general law relating to its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and,”

모든 지방정부는 헌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거나 그 재산, 업무 또는 정부와 관련된 일반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방법을 채택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ii) every local government, as provided in this chapter,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r not inconsistent with any general law, relating to the following subjects, whether or not they relate to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legislature shall restrict the adoption of such a local law relating to other than the property, affairs or government of such local government: ”

이 장에서 규정된 대로 모든 지방정부는 다음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들의 사적재산과는 관계없이 헌법 규정이나 일반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방법을 채택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그 지방정부의 재산, 업무 또는 정부 이외의 것에 관한 현행법의 채택을 입법기관이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다.

“(1) The powers, duties, qualifications, number, mode of selection and removal, terms of office, compensation, hours of work,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its officers and employees, except that cities and towns shall not have such power with respect to members of the legislative body of the county in their capacities as county officers.”

시와 타운을 제외하고 권한, 직무, 자격, 번호, 선택 및 제거 방식, 임기, 보상, 근무 시간, 보호, 복지 및 직원의 안전은 카운티 관리로서의 역량하에 카운티의 입법기관에 대하여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This provis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creation or discontinuance of departments of its government and the prescription or modification of their powers and duties.”

이 조항은 정부 부서의 창설 또는 중단, 권한 및 처방의 수정 또는 수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2) In the case of a city, town or village, the membership and composition of its legislative body.”

도시, 타운 또는 빌리지의 경우, 입법기관의 구성

“(3) The transaction of its business.”

사업거래

“(4) The incurring of its obligations, except that local laws relating to financing by the issuance of evidences of indebtedness by such local government shall be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지방정부의 부채 증빙에 의한 자금 조달에 관련된 지방 법률이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과 일치하는

---

것을 제외하고는 의무는 유효하다.

“(5) The presentation, ascertainment, disposition and discharge of claims against it.”  
그것에 대한 클레임의 제시, 확인 및 방출

“(6) The acquisition, care, management and use of its highways, roads, streets, avenues and property.”  
고속도로, 도로, 대로 그리고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사용

“(7) The acquisition of its transit facilities and the ownership and operation thereof.”  
운송 시설의 소유 및 운영

“(8) The levy and administration of local taxes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and of assessments for local improvements, which in the case of county, town or village local laws relating to local non-property taxes shall be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입법부에 의해 승인된 지방세의 징수, 그것의 관리 및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부합하는 지방 개선을 위한 과세는, 카운티의 경우, 지방의 비 재산세에 관한 지방 법 또는 입법부에 의해 제정 된 법률과 일치해야 한다.

“(9)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authorized by the legislature and of assessments for local improvements, which in the case of county, town or village local laws shall be consistent with laws enacted by the legislature.”  
입법부가 승인 한 지방세 징수 및 지방 개선을 위한 과세는 카운티의 경우, 지방 법 또는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법과 일치해야 한다.

“(10) The wages or salaries, the hours of work or labor, and the protection, welfare and safety of persons employed by any contractor or subcontractor performing work, labor or services for it.”  
임금이나 급여, 노동 또는 근무시간, 근로자, 하도급자가 고용한 사람의 보호, 복지 및 안전

“(11) The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its physical and visual environment.”  
물리적 및 시각적 환경의 보호 및 향상

“(12) The government, protection, order, conduct, safety, health and well-being of persons or property therein. This provision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power to adopt local laws providing for the regulation or licensing of occupations or businesses provided, however, that: ”  
개인, 재산의 정부, 보호, 질서, 행동, 안전, 건강 및 복지. 이 조항에는 현지 법률을 채택할 권한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 The exercise of such power by a town shall relate only to the area thereof outside the village or villages therein.”  
빌리지에 의한 권한의 행사는 그 빌리지 또는 그 빌리지 밖에 있는 지역에만 관련된다.

“(b) Except in a case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a county is specifically authorized to regulate

---

---

or license an occupation or business, the exercise of such power by a county shall not relate to the area thereof in any city, village or area of any town outside the village or villages therein during such time as such city, village or town is regulating or licensing the occupation or business in question.”

카운티가 직업 또는 사업을 규제하거나 라이선스하도록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에 의한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해당 도시, 마을 또는 마을이 그 지역의 직업 또는 사업을 규제하거나 허가하는 동안 그 마을 또는 마을 외부의 어떤 도시의 어떤 도시, 마을 또는 지역에도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13) The apportionment of its legislative body and, only in connection with such action taken pursuant to this subparagraph, the composition and membership of such body, the terms of office of members thereof, the units of local government or other areas from which representatives are to be chosen and the voting powers of individual members of such legislative body. The power granted by this subparagraph shall be in addition to and not in substitution for any other power and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apply only to local governments which adopt a plan of apportionment thereunder.”

입법기관의 할당, 이 조항에 따라 취해진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단체의 구성과 회원권, 그 구성원의 임기, 지방정부의 단위 또는 대표가 선출되는 다른 분야, 그리고 그러한 입법기관의 개별 구성원들의 투표권. 이 조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은 다른 권한에 추가되거나 대체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규정은 그 배분 계획을 채택한 지방정부에만 적용된다.

“(a.) A plan of apportionment adopted under this subparagraph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standards, which shall have priority in the order herein set forth, to the extent applicable: ”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배분 계획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준은 본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를 가진다.

“(i.) The plan shall provide substantially equal weight for all the voters of that local government in the allocation of representation in the local legislative body.”

이 계획은 지방 입법기관의 대표를 배정할 때 해당 지방정부의 모든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비중을 제공해야 한다.

“(ii.) In such plan adopted by a county, no town except a town having more than one hundred and ten per cent of a full ratio for each representative, shall be divided in the formation of representation areas. Adjacent representation areas in the same town or city shall not contain a greater excess in population than five per cent of a full ratio for each representative.”

한 카운티에 의해 채택된 계획에서 각 대표의 전체 비율 110%인 마을을 제외한 모든 마을은 대표 지역의 형성에 있어서 분리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시 또는 도시의 인접한 대표 구역은 각 대표자의 전체 비율의 5%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iii.) The plan shall provide substantially fair and effective representation for the people of the local government as organized in political parties.”

이 계획은 정당에서 조직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성을 제공해야 한다.

“(iv.) Representation areas shall be of convenient and contiguous territory in as compact form

---

---

as practicable.”

대표 지역은 가능한 한 간결한 형태로 편리하고 인접한 영역이어야 한다.

“(14) The powers granted to it in the statute of local governments.”

지방정부의 법령에 부여된 권한

“ b. A county:

(1) The adoption, amendment or repeal of a county charter pursuant to article four of this chapter in addition to its powers under this article.”

본 조항의 권한 외에 이 장의 제4조에 의거한 카운티 헌장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

“(2) The establishment of a county tax department headed by a director appointed by and serving at the pleasure of the board of supervisors, which director shall, subject to authorization of such board (a) employ necessary employees, (b) advise with and assist all assessors, collectors and receivers of taxes of the various tax districts within the county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c) assist in the preparation of equalization rates with the various tax districts within the county, (d) assist in the disposition and sale of real property acquired by the county as the result of enforcement of unpaid taxes, and (e) perform such other duties as shall be prescribed by such board.”

“(4) The creation of an office of administrative assistant to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supervisors and assignment to and performance by such an assistant, under the general supervision of such chairman, of specified administrative functions, powers and duties on behalf of such board, with provision for periodic reports to such board, and with further provision that such local law shall not divest such board of such functions, powers and duties.”

이사회 의장에 대한 행정 보조원 창설과 보조의 임무 및 수행은 의장의 일반적인 감독하에, 이사회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공으로서의 구체적인 기능을 위해, 지방 법령이 역할, 권한, 및 임무를 해임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진다.

“(5) The compensation to be paid from county funds to public officers or employees who are not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unty other than members of the judiciary.”

(5) 카운티 자금을 카운티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

“(6) The method for the correction of assessment rolls and tax rolls as authorized by title three of article five of the real property tax law, subject to review by the courts as provided by law.”

(6) 법에 규정된 재판소의 재검토를 요하는 부동산 세법 5조 3항에 의해 승인된 과세 롤 및 과세 목록 수정 방법

“(7) The protection or preservation of game, game birds, fish or shell fish on county-owned lands.”

(7) 카운티 소유의 토지에서 게임, 새 사냥, 어류 또는 조개류의 보호 또는 보존

“(8) The control of floods or the conservation of soil.”

---

---

(8) 홍수 통제 또는 토양의 보전

“(9) The reforestation of lands owned by the county.”

(9) 카운티 소유 토지의 재산림화

“(10) The eradication or prevention of bovine tuberculosis or other infectious or communicable diseases affecting animals or fowls.”

(10) 소 결핵증이나 다른 전염병 혹은 동물 또는 조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전염성 질병의 박멸 혹은 예방

“(11) The regulation or prohibition of the dumping of garbage, rubbish, ashes or other waste material in or adjacent to creeks or streams in watershed areas improved under any flood control or soil erosion program.”

(11) 쓰레기 투기 혹은 폐기물

홍수 통제와 토양 침식 프로그램에 따라 쓰레기 또는 기타 폐기물을 하류 혹은 하천 그 주변의 투기에 대한 규제와 금지가 개선되었다.

“c. A city:

(1) The revision of its charter or the adoption of a new charter by local law adopted by its legislative bod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nd subject to the procedure prescribed by this chapter or by local law adopted pursuant to article four of this chapter.”

“(2) The preparation, making, confirmation and correction of assessments of real property and the review of such assessments subject to further review by the courts as provided by law.”

(2) 부동산 과세의 준비, 작성, 확인 및 수정과 그러한 과세의 검토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재검토를 받는다.

“(3) The authorization, making, confirmation and correction of benefit assessments for local improvements.”

(3) 지역 개선을 위한 혜택 과세의 승인, 작성, 확인 및 수정

“2. Every local government also shall have power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where and to the extent that its legislative body has power to act by ordinance, resolution, rule or regulation.”

2.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입법기관이 조례, 결의,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행동할 권한이 있는 지역 및 지역 법률을 채택하고 개정할 권한을 가진다.

“3. a. A grant of a specific power by this section to one or more local governments shall not operate to restrict the meaning of a general grant of power by this section to the same or any other local government or to exclude other powers comprehended in such general grant.”

3. a. 하나 이상의 지자체에 대한 이 조항에 의한 특정 권한의 부여는 이 조항에 의거한 일반 권한 부여의 의미를 동일 또는 다른 지방정부에 제한하거나 그러한 일반 교부금에 포함된 다른 권한을 제외시키지 아니한다.

“b. The enumeration of powers in this section is not intended to imply that any of such powers

---

---

is not included within the power of a local government to adopt and amend local laws in relation to its property, affairs and government.”

b. 이 절의 권력 열거는 해당 권한이 지자체의 재산, 업무 및 정부와 관련하여 현지 법을 채택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력 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